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나38727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재판경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나3872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가단21285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 2018. 1. 9.

판결 선고 2018. 2. 6.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가단212852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A, C, E은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명도하고, ② 피고 C, E은 별지 4 목록 기재 각 물건들을 수거하고, ③ 피고 B, D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고, ④ 피고 A, B은 서울 용산구 F 및 G중 별지 3 평면도 표시 1,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ㄱ) 부분을 인도하고, ⑤ 피고 C, D는 서울 용산구 H 및 G중 별지 3 평면도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ㄴ) 부분을 인도하고, ⑥ 피고 E은 서울 용산구 H 중 별지 3 평면도 표시 13, 14, 15, 16, 17,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ㄷ) 부분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분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인' 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되며(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등 참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나. 피고들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각 2017. 5. 25. 이 사건 소장부분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30일 이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2017. 6. 26. 피고들에게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을 통지하였으나 피고들 전부에 대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송달한 후 2017. 7. 19. 원고 전부 승소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송달하였으나 재차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각 2017. 8. 26.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들은 그로부터 2주가 훨씬 경과한 2017. 9. 2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관련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 피고들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더욱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사건이 다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승정

판사김희진

판사정윤택

별지